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59
----------	------

발의연월일 : 2020. 11. 6.

발 의 자 : 박완수 · 이종성 · 김태호
박진 · 추경호 · 양금희
하영제 · 최춘식 · 김은혜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는 109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182명이 사망하고 1,7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의 경우는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41조제1항제4호, 제50조제5호 및 제53조제2항제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가 지하 2층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재위험작업의 허가·관리
7. 기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공자”로 본다.

제4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 제50조제5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4항, 제20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 시설공사를 착공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0조의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가 지하 2층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p>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재위협작업의 허가·관리

7. 기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공자”로 본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

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 11.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한 교육)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

5의2. ~ 11.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p>3. <u>제20조제4항</u>,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 13. (생략) ③·④ (생략)</p>	<p>3. <u>제20조제4항, 제20조의3제1항</u>----- ----- ----- 3의2. ~ 1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	---